

제13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
제2차 본회의 2007. 5. 2(화)

조 례 안

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 창 군 의 회
(산업건설위원회)

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7 ~ 10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07. 4. 27.
제 출 자	산업건설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관내 초·중·고등학교의 운동장 개방 등 학교시설물 개방으로 상하수도요금 등 부담 가중
- 농촌지역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학생들의 교육활동사업 간접지원
- 아울러,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마을은 사유재산이 직·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보상이 없는 실정으로
- 상수도 요금을 일정 비율 감면함으로써 상수원 수질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민원 해소에 기여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 제37조(요금 등의 감면) 제2항에
 - 관내 “초·중·고등학교 및 상수원보호구역” 안에서 수도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.
 - 다만,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 가정용 수도를 사용하는 자에 한함.

3. 참고사항

-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 제37조(요금 등의 감면)
- 신·구조문 대비표

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군수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과 관내 초·중·고등학교 및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수도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 가정용 수도를 사용하는 자에 한하며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7조(요금 등의 감면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군수는 <u>사회복지사업법</u> 제2조에 의한 <u>사회복지시설에</u> 대하여는 요금의 50%를 감면할 수 있다. <u>다만,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타용도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③ ~ ⑤ (생 략)</p>	<p>제37조(요금 등의 감면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군수는 「<u>사회복지사업법</u>」 제2조에 의한 <u>사회복지시설과 관내 초·중·고등학교 및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수도를 사용하는 자에</u> 대하여는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. <u>다만,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 가정용 수도를 사용하는 자에 한하며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